

충청북도도민대상조례증개정조례안

발의년월일 : '99. 7. 6.

발 의 자 : 조례정비특별위원장

의안 번호	127
----------	-----

제안이유

- 대상의 수상부문을 세분화하여 분야별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함.

주요골자

- 현재 대상수상부문 8개 부문을 11개 부문으로 세분화
- 제3조 제2호의 문·예부문을 문학부문, 예술부문으로 동조 제4호의 교육·체육부문을 교육부문, 체육부문으로 동조 제8조의 산업·근로부문을 산업부문, 근로부문으로 분리개정

침 부

- 충청북도도민대상조례증개정조례안 1부
- 신구조문대비표 1부

충청북도도민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도민대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대상부문) 대상의 수상부문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학술부문
2. 문학부문
3. 예술부문
4. 지역발전부문
5. 교육부문
6. 체육부문
7. 여성부문
8. 청소년부문
9. 농어민부문
10. 산업부문
11. 근로부문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대상부문) 대상의 수상부문은 다음 각호와 같다.		제3조(대상부문).....		
1.(생략)			
2. 문·예부문		1.(현행과 같음)		
3. 지역발전부문		2. 문학부문		
4. 교육·체육부문		3. 예술부문		
5. 여성부문		4. 지역발전부문		
6. 청소년부문		5. 교육부문		
7. 농어민부문		6. 체육부문		
8. 산업·근로부문		7. 여성부문		
		8. 청소년부문		
		9. 농어민부문		
		10. 산업부문		
		11. 근로부문		